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6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 : 김상희 · 박홍근 · 안규백

맹성규・이해식・이수진비

이은주 · 양경숙 · 신정훈

양정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 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 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
	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
	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
	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
	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1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
	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u>자</u>
<u>1.</u> ~ <u>3.</u> (생 략)	$2. \sim 4.$ (현행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